

창원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8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8. 26.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1. 12. 6. 선고 2021가소7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강은, 판사 조유리